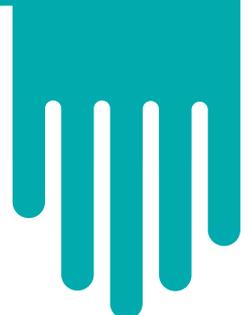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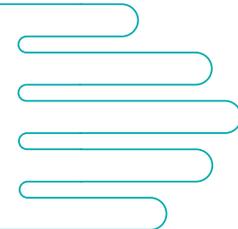




부담은 작게 지원은 크게



LEADING THE MUTUAL AID SERVICE INSTITUTE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Contents

| | |
|-------------------|----|
| ● I 인사말 | 05 |
| ● II VISION 2020 | 06 |
| ● III 공제회의 어제와 오늘 | 08 |
| ● IV 공제사업 | |
| 재해복구공제사업 | 10 |
| 손해배상공제사업 | 11 |
| 공공청사정비공제사업 | 12 |
| 단체상해공제사업 | 13 |
| 회원지업사업 | 14 |
| ● V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15 |
| ● VI 옥외광고사업 | 16 |
| ● VII 사업조직 | 18 |



[지방재정의 버팀목]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신뢰하고 아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제회는 1964년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자치단체 공유재산에 대한 공제사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옥외광고사업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 기금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아 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재정지원 전문기관입니다.

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제회비 부담은 줄여나가는 동시에 보상의 범위와 규모는 확대함으로써 지방예산 절감과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공제회비 적립금은 투자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제회는 지방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VISION 2020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공제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국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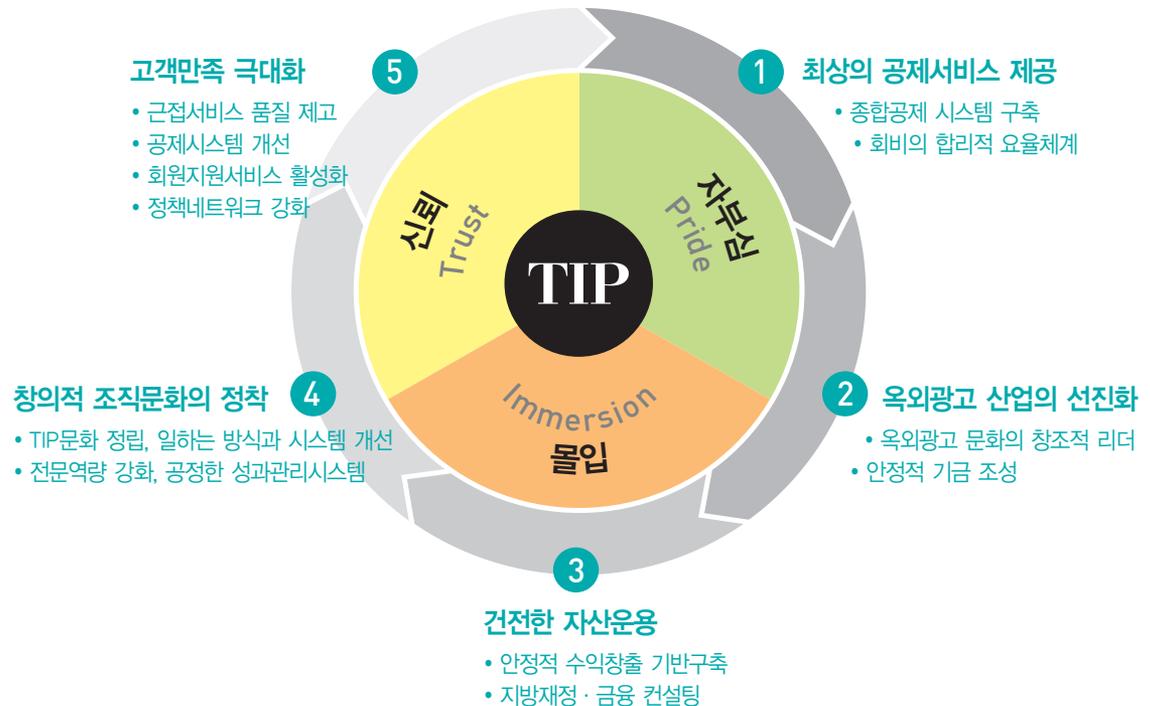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가 신뢰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제서비스 기관’

| Vision 선언문 |

- 지방자치단체가 신뢰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제 서비스 기관** (Leading The Mutual Aid Service Institute) 이 된다.
- **높은 창의성** (High Creativity), **높은 성과** (High Performance), **높은 고객만족** (High Customers Satisfaction) 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우리나라 공제제도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최상의 공제서비스로 지방재정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전한 자산운용으로 지방재정의 버팀목이 되며, 옥외광고 산업의 선진화로 세계 옥외광고 문화의 메카가 된다.

| 5대목표 및 핵심가치 |

- **Trust**
 조직내 신뢰구축을 통해
 긍정적 사고와 동기 유발
- **Immersion**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
 으로 최고의 성과 창출
- **Pride**
 최고의 전문역량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한다는
 자부심 고취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46년 '고객이 만족하는 공제서비스 기관'

1964.9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 설립

- 1964. 9 건물재해복구 및 개축비지원사업
- 1983. 1 공공청사정비공제사업

1988.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명칭 변경

- 1990. 1 지방재정발전연구지원사업
- 1994. 1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사업
- 1999. 1 영조물배상공제사업
- 1999.12 지방공기업발전지원사업
- 2003. 2 업무배상공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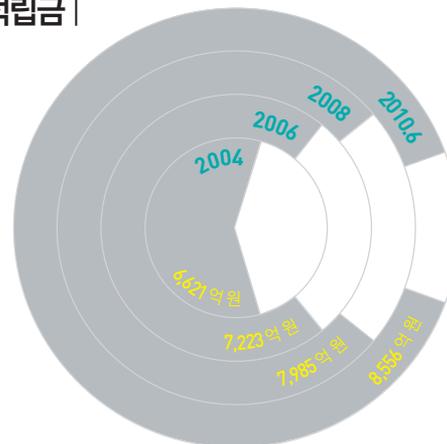
2003.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

- 2008. 5 옥외광고사업
- 2010.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위탁 운영

| 회원 |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조합

| 적립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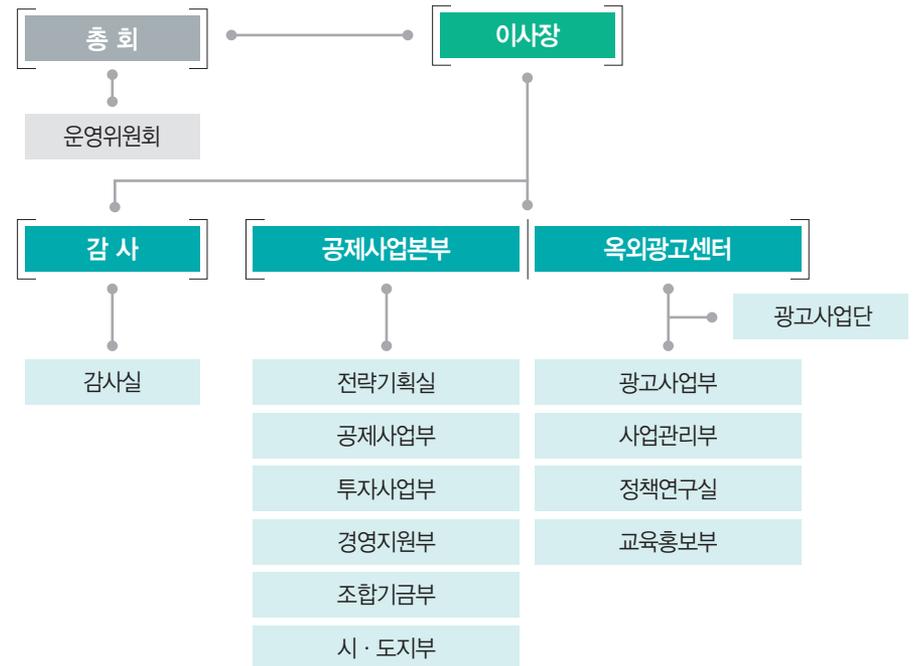
| 주요사업 |

- 공유재산(건물·시설물·관공선)의 재해복구공제사업
- 영조물의 관리하자 또는 업무수행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공제사업
- 공공청사정비공제사업
- 단체상해공제사업
- 지방공기업발전지원사업
- 지방재정발전연구지원사업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위탁 운영
- 옥외광고 산업의 육성·발전지원사업



| 조직 |

이사장, 감사, 이사2(공제사업본부장, 옥외광고센터장),
1단 3실 7부 16시·도지부(공유재산담당부서)



● 재해복구공제사업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공유건물·시설물 및 지방관공선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공제금을 지급하며, 손해보험사 대비 40% 이상의 저렴한 공제회비 부담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건물·시설물재해복구 |

공유건물 및 시설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공제금을 지급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

• 등록대상

- 건물 :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의 일체
- 시설물 : 사무기기/기계설비/기구/집기 등

• 보상범위

- 화재, 풍·수·설해 및 건물의 자연도괴·붕괴로 인한 물적손해
- 테러행위로 인한 물적손해
- 전기위험, 구내폭발, 스프링클러, 소오·노동쟁의, 기계위험, 종합공제
- 화재로 인한 제3자 신체손해배상(특수건물은 의무가입)

| 지방관공선재해복구 |

지방관공선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공제금을 지급하여 지방관공선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

• 등록대상

-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선박(선체·기관·의장품 등) 일체

• 보상범위

- 침몰, 좌초, 충돌, 풍파 등 해상 고유위험에 의한 사고
- 화재로 인한 멸실·손상
- 구조 시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행방불명으로 인한 손해



● 손해배상공제사업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와 자치단체의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중 업무과실에 따른 배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회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손해 보험사 대비 25% 이상 저렴).

| 영조물배상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

• 등록대상

- 청사, 복지·문화·체육·공원시설 및 도로, 주차장, 생산물 배상 등

• 배상범위

-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 보존비용,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 업무배상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민원증명발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손해를 배상

• 등록대상

- 인감, 주민등록, 여권, 차량등록 업무 등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

• 배상범위

- 민원업무 수행 중 과실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 배상청구권리의 행사·보존비용, 소송·변호사·중재·화해 비용, 보상한도액 내의 공탁보증보험료 등





● 공공청사정비공제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청사 정비를 위한 신·재축비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여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자치단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쾌적한 지방행정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 행정청사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청사
- 사업소 : 시·도, 시·군·구 사업소
- 문화예술회관 : 시·군·구민회관
- 소방관서 : 소방서, 소방파출소
- 기타 : 보건소, 공무원교육원, 주민복지 (스포츠, 여성, 장애인 등) 관련시설

| 지원기준 |

- 지원한도액 : 청사별 한도액 범위내
(신축·재축) 당해 건축비의 50% 이내
(증축·개축) 당해 건축비의 50% 이내
(대수선) 당해 건축비(공사비 전액)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비는 최대 50억 원 한도내
- 지원조건 :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연리 3%
- 지원방법 : 착공 후 지원금 신청 시 배정액 전액 일시 지급
- 상환시기 : 매년 5월 31일(12월~5월 지급분), 11월 30일(6월~11월 지급분)

| 지원절차 |

청사정비지원금 차입 및
지방채발행 승인신청
(자치단체→행안부)

지방채발행 승인
(행안부→자치단체)

청사정비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신청
(자치단체→우리회)

지원금 지급
(우리회→자치단체)



● 단체상해공제사업

회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사고로 사망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해줌으로써 근무의욕 고취, 자치행정에 적극적 참여 기회 마련 및 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한 공제회비 부담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등록대상 |

- 전국 자치단체의 이·통장

| 보상범위 |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상

| 보상종류 |

- **상해 및 질병 담보**
 - 상해사망 / 후유장해
 - 질병사망
 - 상해 / 질병 : 입원, 외래의료비 및 처방조제비 등
- **진단금 담보상해 및 질병 담보**
 - 암,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 **기타 비용성 담보**
 - 교통사고 위로금
 - 보이스피싱 위로금
 - 일상생활 배상책임



● 회원지원사업

지방공기업발전지원, 지방재정관련 교양도서 발행,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자치단체 공무원의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 및 실무연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발전지원 |

지방공기업분야의 사업영역 적정화 및 경영관리의 전문화를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사업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지원사업

- 지방공기업발전 연구용역 및 세미나 경비 지원
- 경영평가 우수 지방공기업 포상금 지원 등

| 지방재정발전연구지원 |

지방재정·지방세 제도의 개선과 지방공무원의 실무향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자료를 제공하며, 업무연찬 전문교양도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도서를 발간하여 자치단체에 배부

• 도서발간

- 정기 간행물 (지방재정과지방세지)
- 부정기 간행물 (지방재정관련 법령집 등)

• 세미나개최

- 지방재정·정부회계 세미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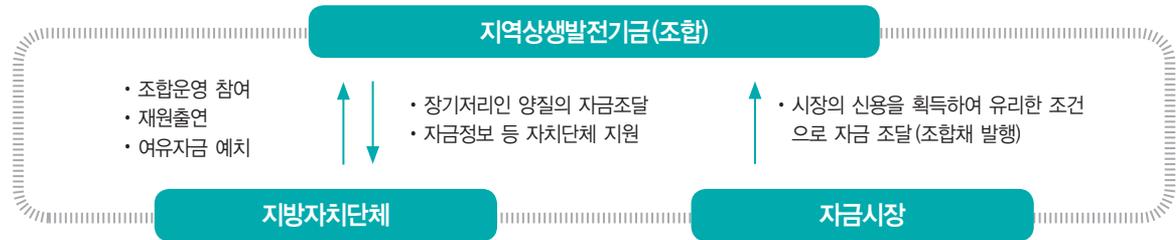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위탁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 및 지방채 인수를 전담하는 금융기관 육성을 목표로 하여, 2010년 5월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설립하였고, 공제회가 조합 사무를 포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금(조합) 기능



• 단기 기능(2012년까지)

- **재원** : 수도권의 매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의 일정액을 각출하여 매년 3,000억원의 기금을 출연
- **용도** :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 **조합역할** : ① 기금배분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 재정지원
② 지방채발행 대행 및 정부자금 협의 및 자치단체 알선 등
- **조합구성** :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공제회에 업무를 포괄 위탁 (조합장은 공제회 이사장이 겸임)

• 중·장기 기능(2013년부터)

- **재원** : 수도권 자치단체 출연금, 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등 여유자금 예치금, 조합채 발행 수입 등으로 재원규모 확대
- **조합의 역할** : ① 장기·저리의 융자지원
② 자치단체 재정관리 컨설팅
- **조합구성** : 기금규모가 증가되고 조합기능이 확대되면 사무국을 확대 설치



● 사업 / 역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과 관련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 국제행사 및 옥외광고물 정비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용 사업, 홍보 및 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운영 |

- **사업명** : 국제대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 **운영방식** : 사업자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익금을 납부받는 위탁사업

| 수익금 배분 |

- **국제행사준비, 운영 및 시·군·구 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지원**
 -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50%)
 -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20%)
 - 시·군·구 등 자치단체 및 옥외광고센터(30%)

| 주요역할 |

- **옥외광고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
 - 장소임대 및 행정절차 지원, 지속적인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광고물의 설치와 고객지원 강화**
 -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연친화적 광고물 설치 및 사후관리 강화
- **정부의 옥외광고 정책지원 및 개선방안 모색**
 -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
- **옥외광고 전문인력 양성, 신소재, 신기술 개발 기여**
 - 친환경 디자인, 바람직한 간판문화 정립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과거와 달라진 사업방식 |

- 전문기관 (한국옥외광고센터) 설립을 통한 옥외광고사업 추진
- 다수기업의 참여기회 보장 및 투명한 경쟁방식의 사업자 선정
- 국제적 기준에 의한 사업장별 광고효과 분석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방식의 획기적인 개선
-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국제대회 및 자치단체 불법광고물 정비 재정지원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종류 |

• 지주이용간판

- 설치장소 : 도로 갓길로부터 30m 밖의 지역
- 규격 : 가로 18m x 8m (총면적 288㎡ 이내)
- 높이 : 도로 수평면으로부터 25m 이내
- 이격거리 : 도로 30m이상, 간판간 500m이상
- 광고물의 형태 : 평면형, 복합형, 입체형



평면형



복합형



입체형

• 홍보탑

- 설치장소 : 공항, 철도역사, 버스 및 항만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진출입로 제외) 부지 내
- 규격 : 가로 10m x 5m 이내
- 높이 : 10m 이내
- 이격거리 : 도로 1m 이상
- 광고물의 형태 : 평면형, 복합형, 입체형



평면형



복합형



입체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37조제2항, 별표 7 -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설치특례〉 - 나들목과 분기점, 88올림픽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서울-안성구간)에 대하여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에서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평면형 광고물 등의 높이는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초과할 수 없다.



| 본부 |

• 공제사업부

| 업 무 | 전화번호 | E-mail |
|--------------------|---------------|-----------------------|
| 공제사업업무 총괄 | 02) 3274-2040 | mrrmskqqqq@klfa.or.kr |
| 재해복구(건물·시설물)보상 | 02) 3274-2034 | kgb@klfa.or.kr |
| 재해복구(건물·시설물)등록 | 02) 3274-2014 | yongary@klfa.or.kr |
| 공공청사·지방관공선·공기업발전지원 | 02) 3274-2011 | boaz@klfa.or.kr |
| 손해배상(영조물·업무) | 02) 3274-2024 | bbory@klfa.or.kr |
| 손해배상(영조물·업무) | 02) 3274-2023 | nuyuna@klfa.or.kr |
| 단체배상 및 교육 | 02) 3274-2043 | im0573@klfa.or.kr |
| 공제사업 업무지원 | 02) 3274-2041 | jskim@klfa.or.kr |

• 광고사업부

| 업 무 | 전화번호 | E-mail |
|-----------------------|---------------|--------------------|
| 광고사업업무 총괄 | 02) 3274-2051 | gregori@klfa.or.kr |
| 광고사업추진(3-1, 5-3권역) | 02) 3274-2055 | kwl815@klfa.or.kr |
| 광고사업추진(2, 6권역) | 02) 3274-2057 | yslee@klfa.or.kr |
| 광고사업추진(1, 3-2, 4-3권역) | 02) 3274-2054 | samuel@klfa.or.kr |
| 광고매체관리 | 02) 3274-2056 | euntoon@klfa.or.kr |
| 광고사업(4-1권역) 및 디자인업무 | 02) 3274-2058 | sonia@klfa.or.kr |

| 시·도 지부 |

| 시·도지부 | 소 속 | 행정전화 | 일반전화 | Fax | E-mail |
|-------|---------|----------|----------------|----------------|---------------------|
| 서울 | 재무과 | 151-2618 | 02) 2171-2618 | 02) 2171-2619 | seoul@klfa.or.kr |
| 부산 | 회계과 | 152-2736 | 051) 888-2736 | 051) 888-2739 | pusan@klfa.or.kr |
| 대구 | 회계계약심사과 | 153-3095 | 053) 803-3095 | 053) 803-3069 | daegu@klfa.or.kr |
| 인천 | 회계계약심사과 | 154-2568 | 032) 440-2568 | 032) 440-8653 | inchon@klfa.or.kr |
| 광주 | 회계과 | 155-3136 | 062) 613-3136 | 062) 613-3119 | kwangju@klfa.or.kr |
| 대전 | 지적과 | 156-5477 | 042) 600-5477 | 042) 600-2849 | daejeon@klfa.or.kr |
| 울산 | 회계과 | 157-6372 | 052) 229-6372 | 052) 229-2539 | ulsan@klfa.or.kr |
| 경기 | 회계과 | 141-4180 | 031) 8008-4180 | 031) 8008-2339 | gyeonggi@klfa.or.kr |
| 강원 | 토지관리과 | 142-2339 | 033) 249-2339 | 033) 249-4059 | kangwon@klfa.or.kr |
| 충북 | 회계과 | 143-5952 | 043) 220-5952 | 043) 220-2839 | chungbuk@klfa.or.kr |
| 충남 | 세무회계과 | 144-2318 | 042) 251-2318 | 042) 251-2319 | chungnam@klfa.or.kr |
| 전북 | 재정과 | 145-2334 | 063) 280-2334 | 063) 280-3168 | chonbuk@klfa.or.kr |
| 전남 | 행정과 | 146-3481 | 061) 286-3481 | 061) 286-4831 | chonnam@klfa.or.kr |
| 경북 | 회계계약심사과 | 147-2316 | 053) 950-2316 | 053) 950-2330 | kyongbuk@klfa.or.kr |
| 경남 | 회계과 | 148-3348 | 055) 211-3348 | 055) 211-3319 | kyongnam@klfa.or.kr |
| 제주 | 세정과 | 149-6918 | 064) 710-6918 | 064) 710-6909 | jeju@klfa.or.kr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www.klfa.or.kr

지방재정의 미래가치

우리 공제회가 만들어 갑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로 135 TEL : 02) 3274-2114 FAX : 02) 3274-2009